



보도자료

▶ 근로자건강보호과 과장 임영섭
사무관 이병재

TEL : 6922-0953
E-MAIL : lemonga@yahoo.co.kr
FAX : 6922-0973

▶ 2008. 12. 18. 배포
▶ 총 3 쪽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알림마당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노동부, 사업장에 다양한 화학물질 유해·위험정보 제공 - 최신 MSDS와 편집프로그램 제공, 근로자용 정보지 보급 등 -

□ 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 정보 전달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

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노동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'96년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제도를 도입·시행하였다

※ 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)는 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·위험성, 취급주의사항, 응급조치요령 등을 기재한 일종의 "화학물질 취급 설명서"로 사업주가 작성하여 비치·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함

○ 그러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MSDS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거나 일부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 정보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

-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MSDS의 최신 유해·위험성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

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 지는 등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

※ '05.1. 경기 화성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태국 여성근로자 8명이 세척제로 사용되는 노말렉산에 중독, '06.4. 경북 칠곡 소재 사업장에서 TCE 누출로 중독사고 발생(2명사망, 2명중독), '07.8. 경기 의왕 소재 사업장 코팅공정(화학물질 취급)에서 화재 발생(6명사망, 2명부상) 등
※ 매년 화학물질로 인해 70~180여명의 직업병자가 발생('05년 73명, '06년 87명, '07년 184명)

○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는 선진외국의 최신 유해·위험성 정보자료를 확보하고 MSDS 작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한편

- 알기쉬운 근로자용 정보지와 경고표지, 스티커, MSDS 작성지침서 등을 개발하고 민간전문기관을 통하여 배포·비치토록 지원하는 등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

□ 주요 대책

○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MSDS 정보를 쉽게 취득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

- 선진외국의 유해·위험성 자료를 파악하여 '10년까지 최신 MSDS 1만6천여종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

- "MSDS 작성 지침서"와 페인트 등 혼합 화학물질의 MSDS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 내년초부터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

○ 전문용어로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는 MSD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로자용 "한장짜리 정보지"와 경고표지, 해당 설비에 부착 가능한 위험스티커를 50만부 만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직접 제공하고

- 벤젠 등 직업병을 유발하는 주요 화학물질 30여종에 대하여는 작업공정별로 위험등급을 예측하여 근로자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
- 전문교육과정 신설,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MSDS 작성자에 대한 전국순회교육을 실시하고
 -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MSDS 작성과 비치,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
- 아울러,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올바르게 사용·관리하고 있는 지를 향후 2년간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
 - MSDS 수거·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서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을 부실 기재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
- 정현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“내년에는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만여개소 전 사업장에 반드시 MSDS·근로자용 정보지·위험스티커 등이 비치·부착 되도록 할 것이며
 - 이번 개선대책의 시행으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예방 등 건강보호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

- ※ 붙임 : 1. 원본 MSDS
 2. 근로자용 1장짜리 정보지(예시)
 3. 중독위험 스티커(예시). 끝.